

## 급여명세서와 기록 보관

고용주는 각 고용인들에 관한 특정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급여 지급 명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기록보관 및 급여 지급 명세서 관련 의무를 지킴으로써 고용인들이 올바른 급여와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급여명세서

고용인들은 급여를 받은 후 하루 이내에 급여명세서(**pay slip**)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을시,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전자적 방법 또는 종이 위에 출력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이름
- 고용주의 ABN
- 고용인의 이름
- 지급일
- 급여의 해당 기간
- 세금 공제 전 및 후의 급여

이 밖에도 급여명세서에는 보너스, 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공제 및 수퍼 연금(**superannuation**)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서식 견본을 다운받으시려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급여명세서 페이지](http://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pay-slips) ([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pay-slips](http://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pay-slips))

#### 최상의 업무 관행에 관한 조언

- 급여명세서는 간단하고 인쇄 가능한 양식으로 발행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정보에 해당 고용인 외의 사람이 접할 수 없도록 합니다

### 기록 보관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무 시간 및 급여에 관한 기록을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분명하게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이 자신의 기록을 보겠다고 요청하면, 고용주는 그 기록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Fair Work의 검사관은 기록들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 단, 발견된 오류와 수정 이유를 기록해 둔다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급여
- 초과 근무를 포함한 근무 시간
- 휴가
- 고용 종료
- 수퍼 연금 기여금 (**superannuation**)
- 개별적 유연 조처 (**Individual Flexibility Arrangements - IFA**)
- 연간 수입 보장
- 사업체 양도

어떤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기록 보관을 위한 서식 견본을 다운받으시려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기록 보관 페이지](http://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record-keeping) ([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record-keeping](http://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record-keeping))

## 다음으로 해야 할 일

- 저희의 급여 지급 명세서 서식 ([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66/Pay-slip-template.doc.aspx](http://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66/Pay-slip-template.doc.aspx)) (Pay slip template) 을 사용하세요.
- 근무 시간을 추적하려면 나의 근무 시간 기록 앱([Record my hours app \(www.fairwork.gov.au/tools-and-resources/record-my-hours-app\)](http://www.fairwork.gov.au/tools-and-resources/record-my-hours-app)) 을 사용하세요
- 기록보관 관련 의무사항을 관리하려면 [서식 및 안내 \(www.fairwork.gov.au/tools-and-resources/templates\)](http://www.fairwork.gov.au/tools-and-resources/templates) 자료를 사용하세요

Page reference No: 7422

## Contact us

Fair Work Online: [www.fairwork.gov.au](http://www.fairwork.gov.au)

Fair Work Infoline: 13 13 94

Need language help?

Contact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on 13 14 50

Hearing & speech assistance

Call through the National Relay Service (NRS):

For TTY: 13 36 77. Ask for the Fair Work Infoline 13 13 94

Speak & Listen: 1300 555 727. Ask for the Fair Work Infoline 13 13 94

---

The Fair Work Ombudsman is committed to providing advice that you can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is website is general in nature. If you are unsure about how it applies to your situation you can call our Infoline on 13 13 94 or speak with a union, industry association or workplace relations professional. Visitors are warned that this site may inadvertently contain names or pictures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who have recently died.